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

일부개정 2024. 2. 22. 규정 900호

1. 개정이유

- O 특수대학원(사회체육대학원, 스포츠융복합대학원) 석사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중 시험을 폐지하고자 함.
- O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부수 조정 등 규정의 조문 신설 및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특수대학원의 논문신청자 및 무논문 신청자 중에서 3학기 또는 4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논문 또는 무논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(안 제4조의2제2항)
- O 학위논문 최종 제출 전까지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7조제2항)
- O 학위논문제출 시 조건을 충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절차 신설(안 제9조제4항)
- 특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에서 외국어시험 합격 폐지 등 조문 정비 (안 제9조제6항, 제10조제2항)
- O 완성된 학위논문 하드커버 제출부수 변경 및 학위논문 도서관 제출방법 신설 등 조문 정비(제14조제1항, 제2항)
- O 규정 전반에 대하여 조문 문구 정비

3. 주**요**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붙 임: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「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」일부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특수대학원 논문제출 및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는 3학기 또는 4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논문 또는 무논문 선택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7조의 제목 "(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)"을 "(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학위논문연구계획서"를 "논문연구계획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연구 진행 시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학위 논문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.
-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일반대학원 : 석·박사학위 수료학점 이수 (예정)자,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논문연구 계획서 심사 합격자
 - 2. 특수대학원 : 석사학위 수료학점 이수(예정)자, 종합시험,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합격자
- ③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(필수)
 - 2. 국제학술대회 참가 1회(필수)
- 3. 전공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참석
- ④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과 실적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9조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3조 제2항"을 "제13조제2항"으로, "영어시험"을 "외국어시험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
- 제10조의 제1항 중 "<mark>필답고사</mark>"를 "외국어시험 중 본교가 주관하는 필답고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- ② 석·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외국어시험 평가의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한다. 제11조제6항 중 "과목담당교수(외부강사포함)중 1명 이상으로 소속대학원장"을 "과목 담당 교수(강사포함)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"으로 한다.
- 제14조제1항 중 "완성된 학위논문 하드커버 5부(파일 별도)를"을 "완성된 학위논문을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하드커버 3부와 PDF 형식의 파일을"로, "소속 대학원장"을 "학술정보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학위논문 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학위논문제출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부 칙(제900호, 2024, 2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4조의2(석사학위 무논문 신청) ① (생 략) **제4조의2(석사학위 무논문 신청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신청 후 변경은 수료 전 한 차례로 한정한다.

제7조(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)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에 지 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 당해 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제9조(학위논문제출 자격) ① (생 략)

- ②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 24학점(전공 12학점을 포함하되, 일반대학원은 연구법 6학점,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공 14학점과 교직교과 4학점 포함)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영어시험,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.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
 - 6학점,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(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) 3. 전공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참석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가능한 자

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- 2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
- 3.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
 - 가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 (필수)
 - 나.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다.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

개 정 안

② 특수대학원 논문제출 및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는 3학기 또는 4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논문 또는 무논문 선택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) ① 논문연구 계획서-----

②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연구 진행 시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학위 논문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후에는 변경 할 수 없다.

제9조(학위논문제출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1. 일반대학원 : 석·박사학위 수료학점 이수 (예정)자,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논문연구 계획서 심사 합격자
- 2. 특수대학원 : 석사학위 수료학점 이수 (예정)자, 종합시험,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합격자 ③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 교과학점 36학점 중 전공 9학점과 연구법 1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(필수) 2. 국제학술대회 참가 1회(필수)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④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
	및 제3항의 조건과 실적을 충족하고 지도
	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⑤</u> 제13조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한 자와	⑥ 제13조제2항
재입학 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지 4년이	
경과한 자는 <u>영어시험</u> 과 종합시험 및 논문	의국어시험
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.	
〈단서 신설〉	다만, 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의 경우에는
	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10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	제10조(외국어시험) ①
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정규등록 또는 연구	
등록을 필한 자로 <u>필답고사</u> 에 응시하고자	외국어시험 중 본교가 주관하는
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필답고사
② 석 ·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	② 석 ·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
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	별표2에 따른 외국어시험 평가의 합격 기준
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, 외국인	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
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	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한다.
③ 외국어시험의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은	<u>〈삭 제〉</u>
별표 2와 같다.	
제11조(종합시험) ① ~ ⑤ (생 략)	제11조(종합시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<u>과목담당교수</u>	⑥ <u>과목담당 교수</u>
(외부강사포함)중 1명 이상으로 소속대학	(강사포함) 중에서 소속대학 원장
<u>원장</u> 이 위촉한다.	
제14조(완성된 학위논문 제출) ① 석·박사	제14조(완성된 학위논문 제출) ①
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하드커버 5부	
<u>(파일 별도)를</u> 소정의 기일까지 <u>소속 대학</u>	받아 하드커버 3부와 PDF 형식의 파일을학술
<u>원장</u> 에게 제출해야 한다.	<u>정보원장</u>
② 하드커버 5부는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	
제출하여야 한다.	논문제출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	부 칙(제900호, 2024. 2 22.)
	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